



도 로 교 통 공 단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응급의료과장)

(경유)

제목 구급차 운전자 대상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 안내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 가.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 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의2(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2. 위와 관련, '20년 이전 이수자의 정기교육 이수 기한('23. 12. 31.)이 도래함에 따라 구급차 운전자(공공, 민간병원 등)의 교통안전교육 이수 안내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개요

1) 교육대상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직원

- 신규교육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 중 신규교육 미이수자
- 정기교육 : 교육 이수 날짜가 '20. 12. 31. 이전인 긴급자동차 운전자

※ 교육 이수 내역 :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내 실명인증 후 확인 가능('붙임1' 참조)

※ 교육 미이수 상태로 긴급자동차 운전 적발 시 운전자 과태료 부과(도로교통법 제160조)

2) 교육과정

- 신규교육(3시간/24,000원)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기 전에 받는 교육
- 정기교육(2시간/16,000원) : 신규교육 이수 후 3년마다 받는 교육

※ 예시) '20. 5. 3. 신규교육 이수 시 '23. 1. 1. ~ '23. 12. 31. 중 정기교육 이

수 必

※ 신규/정기교육 대상여부는 교통안전 교육센터 내 긴급자동차 교육 신청 시 확인 가

능

3) 수강방법 :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trafficedu.koroad.or.kr)에서 온라인 수강

4) 결제방법 :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中 택1

붙임 1. 긴급자동차 온라인교육 이수 내역 확인방법

2. 2023년도 긴급자동차 온라인교육 홍보 리플릿. 끝.

도로교통공단이사장



대리

홍두표

교육관리처장

전결 2023. 12. 15.

이재훈

협조자

시행 교육관리처-4107

(2023. 12. 15.)

접수 응급의료과-4686

(2023. 12. 18.)

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2 (반곡동)

/

전화번호 033-749-4966

팩스번호

/ libra107@koroad.or.kr

/ 대국민 공개

"안전을 지키는 정지선, 서로를 지키는 청렴선"